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21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채현일 · 최민희 · 박민규
장철민 · 양부남 · 황운하
신정훈 · 차지호 · 이재강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씩 두며,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관리의 부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3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3(투표관리관등에 대한 교육)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등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2.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
3.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
4.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날 1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 투표관리관등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6조의3(투표관리관등에 대한 교육)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등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1.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u> <u>2.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u> <u>3.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u> <u>4.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u> <u>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날 1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u> <u>③ 투표관리관등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시간, 그 밖에</u>

<u>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u>
--